

[개정·추록본] 방제대책본부 운영규칙

제2장 방제대책본부 운영규칙 (해경청 훈령)

■ 목적(제1조)

이 규칙은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,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■ 정의(제2조)

■ 용어의 정의

- 지속성 기름 : 「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」 제2조제5호를 말한다.

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

- "유류"란 선박에 화물로서 운송되거나 선용유(船用油)로서 사용되는 원유, 중유 및 윤활유 등 지속성 탄화수소광물성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- "비지속성 기름"이란 휘발유, 경유 등 제1호 이외의 기름을 말한다.

- "위험·유해물질"이란 「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.

■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

- "위험·유해물질"이란 유출될 경우 해양자원이나 생명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적법한 이용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서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과 산적(散積)으로 운송되며, 화재·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물질(액화가스류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- "해안오염조사평가팀"이란 해양오염사고로 오염된 해안의 기름 상태 및 지형특성 등을 조사·평가하고 적절한 방제방법 및 우선순위 등의 결정을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이 구성·운영하는 비상설 조직을 말한다.

- "기동방제지원팀"이란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해양오염방제요원 중 방제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·운영하는 비상설 조직을 말한다.

- "대응부"란 방제대책본부 조직을 구성하는 대응계획부·지원지원부·현장대응부·공보관을 말한다. [25.10.31.신설]

- "대응반"이란 대응부에 소속된 하부기능을 말한다. [25.10.31.신설]

- "지휘참모"란 소관 분야에 관하여 방제대책본부장의 임무수행을 보좌하는 사람으로, 대응부에 속하지 않은 중앙방제대책본부의 국장, 광역·지역방제대책본부의 과장·단장·대장을 말한다. [25.10.31.신설]

- "운영요원"이란 대응부에 편성되어 방제대책본부 비상가동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. [25.10.31.신설]

■ 방제대책본부의 설치기준(제4조) [19/22기출]

-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■ 방제대책본부 설치기준

- 지속성 기름이 10kℓ 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
- 비지속성기름 또는 위험·유해물질이 100kℓ 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
-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고 이외의 경우라도 국민의 재산이나 해양환경에 현저한 피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[25.10.31.개정]

*개정사항 ■ 제3호에 소속기관장 추가 [25.10.31.개정]

-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■ 방제대책본부 설치 제외 사유 [20간부]

- 육지로부터 먼 해상에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연안 유입 우려가 없는 경우
- 단기간 내 방제조치 완료가 예상될 경우
- 침몰한 선박 등에서 장기간에 걸쳐 소량씩 유출되어 대규모 오염피해의 우려가 없는 경우

-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여부는 「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」 제22조에 따른다. [24.5.17.개정]

(구) 제4조(방제대책본부의 설치기준) 제3항

방제대책본부의 설치 여부는 상황대책팀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이 상황대책팀 회의를 개최 이전에 설치를 처치할 수 있다.

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칙 [참고]

■ 제22조(상황대책팀)

-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중요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중요상황별 상황대책팀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상황대책팀장에게 건의하여 상황대책팀을 소집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상황관리계·팀장 또는 해양경찰서 상황실장이 소속 관서장에게 보고하여 상황대책팀을 소집할 수 있다.

☑ 상황담당부서의장 : 해양경찰청 상황실장,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장, 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, 서해5도 특별경비단 경비작전과장

- 상황대책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행정규칙 또는 매뉴얼을 따른다.

기출문제

01. 「방제대책본부 운영규칙」상 해양경찰청장이 방제대책 본부를 설치해야 하는 유출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■ 19년 3차 기출

- ㉠ 지속성 기름 () 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
㉡ 비지속성기름 또는 위험·유해물질이 ()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

- ① 10 kℓ - 200 kℓ ② 10 kℓ - 100 kℓ
③ 50 kℓ - 100 kℓ ④ 50 kℓ - 200 kℓ

정답 ■ ②

해설 ■ 지속성기름 10kℓ 이상 비지속성기름 또는 위험·유해물질이 100kℓ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제대책본부 설치하여야 한다.

02. 해양경찰청은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상 방제대책본부 구성 등과 관련하여 「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(훈령)」을 제정·시행하고 있다.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■ 20년 간부 기출 [법령개정]

- ① 비지속성기름 100 kℓ 이상이 유출되면 해양경찰청장은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.
② 지속성기름 10 kℓ 이상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.
③ 육지로부터 먼 해상에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연안유입 우려가 없는 경우라도 우선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.
④ 방제대책본부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해양경찰청,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설치한다. 다만, 사고상황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.

정답 ■ ③

해설 ■ [25.10.31.개정사항 반영]

육지로부터 먼 해상에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연안유입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■ 방제대책본부의 설치방법(제5조) [20기출]

-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오염물질의 유출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고 발생 해역을 관할하는 각 기관에 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사고대응을 위해 상급 방제대책본부의 지원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상급·하급 방제대책본부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.

[25.10.31.개정]

✕ (구) 법령

- ①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의 유출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방제대책본부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유출 규모를 판단하기 곤란한 사고 초기에는 지역방제대책본부를 우선 설치하고, 이후 사고상황을 평가하여 광역 또는 중앙방제대책본부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■ 방제대책본부 구분

1. 중앙방제대책본부 : 지속성 기름이 500kℓ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
2. 광역방제대책본부 : 지속성 기름이 50kℓ 이상(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·유해물질은 300kℓ 이상)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
3. 지역방제대책본부 : 지속성 기름이 10kℓ 이상(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·유해물질은 100kℓ 이상)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

- ② 방제대책본부장(이하 본부장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■ 방제대책본부장

1. 중앙방제대책본부장 : 해양경찰청장
2. 광역방제대책본부장 : 지방해양경찰청장
3. 지역방제대책본부장 : 해양경찰서장

- ③ 방제대책본부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해양경찰청,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설치한다. 다만, 사고상황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.

[25.10.31.개정]

✕ (구) 법령

- ③ 방제대책본부는 사고발생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사고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,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.

기출문제

01. 다음 중 「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」 상 <보기>의 설명과 관련있는 방제대책기구로 가장 옳은 것은?

■ 22년 2차 기출

〈보 기〉

지속성 기름이 10kl 이상 50kl 미만(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·유해물질은 100kl 이상 300kl 미만)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

- ① 방제대책반 ② 지역방제대책본부
③ 광역방제대책본부 ④ 중앙방제대책본부

정답 ■ ②

해설 ■ 지속성 기름이 10kl 이상 유출시 지역방제대책본부가 설치된다.

02. 다음은 「방제 대책본부 운영 규칙」 제5조에 따른 방제 대책본부의 설치에 대한 내용이다.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■ 20년 3차 기출

- ㉠ 중앙방제대책본부 : 지속성 기름이 ()kl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
㉡ 광역방제대책본부 : 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·유해물질은 ()kl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
㉢ 지역방제대책본부 : 지속성 기름이 ()kl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

- ① 560 ② 650 ③ 810 ④ 900

정답 ■ ③

해설 ■

1. **중앙방제대책본부** : 지속성 기름이 **500kl 이상**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
2. **광역방제대책본부** : 지속성 기름이 **50kl 이상**(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·유해물질은 **300kl 이상**)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
3. **지역방제대책본부** : 지속성 기름이 **10kl 이상**(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·유해물질은 100kl 이상)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

지휘체계(제5조의2) [25.10.31.산설]

- ① 상급 방제대책본부와 하급 방제대책본부가 동시에 운영되는 경우 사고 현장의 직접적인 지휘는 사고 발생 해역을 관할하는 본부장이 한다.
② 상급 본부장은 하급 본부장이 사고현장을 지휘할 경우 지원 및 조정을 수행한다.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 및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 본부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다.
④ 제3항에 따른 지휘권의 이양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유·무선 통신망을 통해 지휘권을 이양할 수 있으며, 사후 서면으로 보완해야 한다.

방제대책본부 조직(제6조) [25.10.31.개정]

- ① 중앙방제대책본부는 본부장, **부본부장**, 중앙조정관 각 1명과 대응부를 둔다. 이 경우 중앙본부장이 따로 지명하지 않는 한 부본부장은 차장, 중앙조정관은 해양오염방제국장이 된다.
② 광역·지역방제대책본부는 본부장, 광역·지역조정관 1명 및 대응부를 둔다. 이 경우 광역·지역본부장이 따로 지명하지 않는 한 광역조정관은 지방해양경찰청 **안전총괄부장**(**안전총괄부장이 없는 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방제과장**), 지역조정관은 해당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이 된다.
③ 각급 방제대책본부별 운영기준, 조직체제와 담당 업무는 별표 1을 따른다. 다만, 사고의 규모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부·반을 통합하거나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× (구) 법령

방제대책본부의 구성(제6조)

- ① 방제대책본부 운영기준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조직체제와 담당 업무는 별표1과 같다. 다만, 사고의 규모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 또는 팀을 **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**.
② 방제대책본부의 구성원은 해양경찰공무원, 관계 기관의 장이 파견한 사람과 「해양환경관리법」에 따른 방제의무자(방제의무자가 지정한 해상보험·감정, 해양오염방제 또는 해상구난 관련 단·업체의 임직원 등의 대리인을 포함) 등으로 구성한다.
③ **해양경찰서장은 매년 정기발령 후 1개월 이내에 방제대책본부 운영 요원을 선발하여 대상자에게 공지해야 한다**.
④ 운영 요원을 선발한 이후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자 또는 대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한다. 이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**해양오염방제과장**에게 통지해야 한다.

직무대행(제6조의2)

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본부장 또는 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■ 방제대책본부 구성원(제6조의3) [25.10.31.신설]

- ① 방제대책본부의 구성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기관의 장이 파견한 자로 구성한다.
- ② 본부장은 정기전보 시 방제대책본부 운영요원을 선발하여 공지해야 한다.
- ③ 운영요원을 선발한 이후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자 또는 대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한다. 이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**기동방제과장** 또는 해양오염방제과장에게 통지해야 한다.

***개정사항** ■ 운영요원 변경 시 통지 대상자에 기동방제과장 추가

참고조문

■ 운영요원의 파견 요청(제7조)

- ① 본부장은 소속 기관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제대책본부 운영요원을 파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, 이 경우 본부장에게 파견근무자 명단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.
- ③ 방제대책본부로 파견된 근무자는 본부장의 명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.
- ④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■ 본부장의 임무(제8조)

-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오염사고 분석·평가 및 방제 총괄 지휘
2. 인접 국가 간 방제지원 및 협력
3. 오염물질 유출 및 확산의 방지
4. 방제인력·장비 등 동원범위 결정과 현장 지휘·통제
5. 방제전략의 수립과 방제방법의 결정·시행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제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

- ② 본부장은 「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」 제4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방제기술지원협의회 및 지역방제대책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■ 방제대책회의(제9조)

- ① 본부장은 오염사고의 상황분석·평가 및 합리적 방제조치를 위해 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② 방제대책회의는 **본부장 주관**으로 1일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**필요시** 본부장은 **부본부장, 조정관** 등을 지정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 다만, 회의안건 또는 방제조치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✕ (구) 법령

- ② 방제대책회의는 본부장 주관으로 1일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회의안건 또는 방제조치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.

- ④ 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방제와 원활한 방제협력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
1.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위원
2. **광역** 또는 지역방제대책협의회 위원
3. 방제의무자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- ⑤ 제4항제1호,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방제대책회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☒ 방제의무자는 수당, 여비지급 제외

- ⑥ 본부장은 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발언자, 발언내용 및 결정사항 등 회의내용을 기록·보존해야 한다.

■ 보고체계(제10조)

- ① 광역 또는 지역본부장은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한 경우에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 등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보고양식에 따라 **1일 2회 이상** 실시해야 한다. 다만, 본부장은 사고대응 진행경과에 따라 보고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.

[25.10.31.단서신설]

참고조문

■ 제11조(운영요원의 근무)

-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 운영요원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.

■ 운영요원 추가 선발

1. 방제대책본부 운영 기간이 2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
2. 기존 구성 요원만으로는 지정된 기한 안에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본부장이 인정한 경우

- ② 본부장은 사고상황의 변화에 따라 방제대책본부 운영요원의 일부만 근무하게 하거나 교대근무조 편성 등의 방법으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- ③ 본부장은 방제대책본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근무한 운영요원과 기동방제지원요원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.

■ 제12조(운영요원의 복장)

- ① 본부장은 방제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복장의 형상과 색상은 「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 제17조를 준용한다.

■ 방제대책본부의 해체(제13조) [25.10.31.개정]

- ① 본부장은 해양오염방제 진행정도를 감안하여 방제 대책본부를 해체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해체는 방제대책회의를 거쳐 결정한다.
- ③ 지역 및 광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방제대책본부를 해체하기로 결정한 경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,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■ 방제대책본부 해체시 보고 내용

1. 해양오염사고 발생 개요
2. 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설치시기 · 장소 및 방제대책회의 결과 등 포함)
3. 해양오염 현황
4. 방제조치 현황 및 조치결과
5. 그 밖의 필요한 사항

✕ (구) 법령

■ 제13조(방제대책본부의 해체)

- ① 해양오염방제 진행정도를 감안하여 방제대책본부를 광역방제 대책본부 또는 지역방제대책본부로 전환하거나 해체할 수 있다.
- ② 방제대책본부의 해체 또는 전환은 방제대책회의를 거쳐 결정한다.
- ③ 본부장은 방제대책본부를 해체하기로 결정한 경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- ④ 방제대책본부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에서 수행한 모든 서류 및 자료를 사고발생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.
- ⑤ 방제대책본부의 해체 후 해양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던 업무는 사고발생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로 인계해야 한다.

💡 기출문제

01. 「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■ 23년 3차 기출 [법령개정]

- ① 광역방제대책본부는 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·유해물질이 500㎏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된다.
- ② 중앙방제대책본부는 본부장, 부분부장, 중앙조정관 각 1명과 대응부를 둔다. 이 경우 중앙본부장이 따로 지명하지 않는 한 부분부장은 차장, 중앙조정관은 해양오염방제국장이 된다.

- ③ 방제대책회의는 부분부장의 주관으로 1일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방제대책본부의 해체 후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에서 수행하던 업무는 해양경찰청으로 인계해야 한다.

정답 ■ ②

해설 ■ [25.10.31.개정내용 반영]

- ① 광역방제대책본부는 지속성 기름이 50㎏ 이상(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·유해물질은 300㎏ 이상)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
- ③ 방제대책회의는 본부장 주관으로 1일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방제대책본부의 해체 후 해양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던 업무는 사고발생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로 인계해야 한다.

📖 참고조문

■ 제14조(기동방제지원팀의 지원요청)

- ① 본부장은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기동방제지원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기동방제지원팀 지원을 요청받은 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.
- ③ 방제대책본부에 동원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기동방제지원팀은 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방제업무를 수행한다.

■ 제15조(방제현장지휘소 등의 설치 운영)

- ① 본부장은 긴급방제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제현장지휘소 및 방제보급소 등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.
- ②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하여 방제현장지휘소 및 방제보급소 설치 가능 장소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.

■ 제16조(홍보)

- ① 본부장은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는 경우 공보관을 지정해야 한다.
- ② 본부장은 공보관으로 하여금 사고수습 상황 및 방제조치 등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보도기관에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.
- ③ 해양수산부에 해당 해양오염사고처리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과 협의하여 공보관을 통합·운영할 수 있다.